



거사사어 기본버려 유권해서 L 글 L B L B O 유권 L K

자료제공 / 건설교통부

제10절 의무하도급 및 의무하도급 비율

105.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총공사부기금액상 의무하도급대상 여부

Q 3차에 걸쳐 3개년으로 나누어 시공하는 총공사 부기금액 16억원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하도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A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1항 및 동법시행령('99.8.6 개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건경 58070-1390. '99. 8. 13)

106. 일반건설업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도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Q 수급인(A)이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일반건설업자(B)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B는 전문건설업자(C)에게 다시 공사의 일부는

재하도급한 경우의 의무하도급비율 산정시 A는 B에게 G도급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시키고, B는 도급금액(A로부터 하도급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

A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 일부의 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하도급비율의 산정은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1건공사의 전체공사금액(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았거나 하도급받아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비율은 포함되지 아니하다.

즉,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비율이 위 규정에 의한 하도급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건경 58070-



1924. '99. 12. 1)

107. 하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수급인이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 못할 시 처벌 여부

Q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의무하도급을 30%를 이행하였으나 시공중 하도급업체가 계약불이행 및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하도급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공정관리상 직영시공함으로써 의무하도급비율이 30% 이하로 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A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현행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정이 있는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의무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건경 58070-1077. '99. 6. 19)

108. 설계도서상에 기재된 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Q 교육청에서 발주한 학생체육관 개축공사를 수급받아 지붕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설계도서상에 기재된 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붕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와 설계도서 NOTE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A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된다.(건경 58070-956. '99. 5. 27)

109. 공종의 특성상 목적물을 분리하여 하도급이 곤란한 경우에도 의무하도급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Q ① 부두축조공사중 부잔교설치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종의 특성상 목적물을 분리하여 하도급이 곤란할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하도급을 하여야 하는지

② 의무하도급을 하여야 한다면 분리계약이 곤란한 경우 주요공종을 1개의 전문업체에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일 공종을 구성하는 작업순서상의 형태(현도작업, 절단작업, 부재조립, 용접등)로 분류하여 일부를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A 질의 ①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②에 대하여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도급은 허용되지 아니하다. 그리고 동법령상 공중 전체로만 하도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중을 구성하는 작업단계별로, 또는 작업구간별로 나누어 그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건경 58070-1019. '99. 6. 7)

110. 의무하도급시 나머지 부분의 직접시공 및 자재비 포함 여부

Q 의무하도급을 이행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와 의무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하는 금액에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제공하는 자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A 일반건설업자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현행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일부의 하도급의무를 이행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일반건설업자가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나,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을 이행한 나머지 공사를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하는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제공하는 재료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다.(건경 58070-653. '99. 4. 9)

제4편 시공 및 기술관리

제1장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1.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의 건설기술자배치 의무

Q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사업자등록만으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있어서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등록



한 자를 말한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는 반드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본다.(건경 58070-1080, '99. 6. 19)

2. 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

Q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적격심사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시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였으나 병가 및 퇴직등의 사유로 변경요인이 발생시 적격심사시 제출한 건설기술자와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의 건설기술자배치기준에 맞으면 변경가능한지 여부

② 공동도급 계약시 현장대리인을 공동수급체 대표측에서 소속인원으로 배치하였으나 변경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측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 직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A 질의 ①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의하는 바, 귀 질의의

적격심사시 제출한 건설기술자와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질의 ②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의 규정의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인 건설업자 소속 건설기술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배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 현장에 위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설업자가 분담시공할 부분에 대하여 건설기술자를 각각 배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건경 58070-2854, '97. 10. 10)

3.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시 인접지역의 동일사업장 인정 여부

Q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중인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로서 동일한 리(행정구역)의 인접지역에서 8m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1개 사업자에 의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시공중인 전차사업과 동일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승인에 의해 시공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1인의 건설기술자



를 2개의 공사현장에 걸쳐 배치하여도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을 것인지의 여부 등을 사업계획승인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는 경우라면 중복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건경 58070-166. '99. 1. 23)

4.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시 시공관리책임자의 자격 유무 해당 여부

Q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시공관리책임자로 5년 이상 종사한 자”의 시공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이나 현장대리인을 말하는지 또는 공사 부장이나 공무부장으로 근무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A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책임자는 동 별표 비고 3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즉 시공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이나 현장대리인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귀 질의의 “시공관리책임자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99. 8. 6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건경 58070-1518. '99. 9. 8)

5. 시공참여자와 경미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 여부

Q 시공참여자의 건설기술자 배치의무 및 경미한 건설공사에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건설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이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는 반드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본다.(건경 58070-517. '00. 4. 18)



6.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에서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와 미배치시 감리자로서의 제재 여부 및 방법은

Q 공동주택건설공사의 일부공종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때 각 전문건설업체에서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와 미배치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의 제재 여부 및 방법은

A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이므로 하도급의 경우에도 해당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령상 주택감리자의 업무중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정한 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하수급인 등이 관계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감리자는 그 사항을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건경 58070-525. '00. 4. 19)

7.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과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배치기준 우선 순위

Q Q 50억원 이상 공사로서 현장대리인(예정자)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는 충족하나 공사도급계약서의 건축특기시방서상에는 “현장대리인을 시공기술사 자격소지자를 선임하되 현장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변경이 가능한지

A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동법시행령 제35조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위 규정과 당해 도급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본다.(건경 58070-272. '99. 2. 10)

8. 공동수급체 구성원 소속의 건설기술자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Q ① 사전적격심사에 의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를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으로 배치하였으나 공사시행중 대표사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 소속의 건설기술자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② 건설기술자 배치를 당초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특급기술자로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중 고급기술자로 변경배치가 가능한지

A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그리고 귀 질의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동법령상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의 건설기술자로 배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 별표11 품질시험및검사를위한시설및인력기준에 의거 건설공사현장에 시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시험·검사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다.(건경 58070-565, '99. 3. 26)

9.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의 의미

Q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의 건설기술자배치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통상적인 “현장소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중 한사람이면 되는지 여부

A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

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란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다.(건경 58070-1942, '99. 12. 6)

10. 무경력 기사1급 자격취득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현장배치가 가능한지

Q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로서 하도급금액이 18억6천만원인 경우 기사1급 자격취득자(경력없음)을 시공관리책임자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A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위 규정과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건경 58070-1716, '99. 10. 15)